

#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

내·외국인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백신 예약 및 접종이 진행됩니다. 아래 접종대상자 및 예약방법을 확인하셔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예약하세요.

## 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

### ○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

- 온라인과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음
- ※ 온라인 예약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,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후에 예약 가능

#### < 예약 방법 >

- (온라인 - 본인과 대리인 가능)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(<http://ncvr2.kdca.go.kr>)에서 예약
- (전화 - 본인과 대리인 가능) 질병관리청 콜센터(1399)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(예방접종현황(마우스를 올림) →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클릭)에서 지자체별 예약상담 번호 확인

### ○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(불법체류 외국인 포함)

-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전화(콜센터 1399)로도 예약 가능
- ※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예약은 불가
- ※ 여행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

## ② 국내에서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

- ※ 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 백신의 경우 2회,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
- (접종간격) 18세이상 전체(내·외국인)를 대상으로 2차접종 후 **3개월**
- ※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차접종 후 2개월
- (접종방법) 기존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(<http://ncvr2.kdca.go.kr>)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('21.12.13.부터 사전예약 가능)

## ③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※ 별첨 FAQ 참고

-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가능
- 격리면제서\* 미소지 외국인의 경우\*\* 국내에서 3차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, 해당 증명서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효력
- \* (격리면제 제도) 코로나-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일정 기간 격리하나, 긴급·불가피한 입국 목적(중요한 사업상 목적, 학술·공익적 목적, 인도적 목적, 국외출장 공무원)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
- \*\*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의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격리면제서 발급은 어려움(중대본,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」)
- 예방접종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후 등록

#### < 격리면제서 소지 유무에 따른 확인서 효력 >

	격리면제			방역패스 적용	3차접종
	등록 전 첫입국	등록 후 재입국	확진자 밀접접촉시		
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외국인 (격리면제서 미소지)	X	X	X	○	○
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후 국내에서 3차 접종 완료한 외국인 (격리면제서 미소지)	X	○	○	○	-
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내외국인 (격리면제서 소지)	○	○	○	○	○

## □ 주의사항

- 사전예약 신청에 따른 예방접종 안내를 받고자 하는 등록외국인은 휴대전화번호를 현행화해야 함
- 전화번호 변경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요청
- 신분정보는 백신접종 목적으로만 이용,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음

##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

<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, '21.12.8.(수)>

예방접종관리과(☎043-719-8376)

### 1.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력 등록방법은?

-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·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\*와 격리면제서\*\*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 가능함
  - \* ①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접종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.
  - \*\*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반드시 입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야 함.
- 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은,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외교공한\*\*\*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 가능함
  -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의 경우 번역인증서류 불요(외교공한이 인증효력)
- \*\*\* 보건소에서는 외교공한 사본을 접수하며, 외교공한 원본은 외교부(외교사절담당관실)에서 접수
-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은,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 가능함
  - 보건소에서는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 해외예방접종력 등록 시 시스템 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에 체크 후 등록해야 함

### 2. 외국인도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력 등록이 가능한가요?

-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은 모두 등록 가능함
- 다만,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의 경우 1·2차 국외 접종력 등록 후 재입국 시 또는 확진자 밀접 접촉 시 격리면제는 제외 대상임
-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이 해외접종력을 등록 후 국내에서 3차 접종 완료하는 경우 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, 해당 증명서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예방접종관리과 · 해외출입국관리팀(☎043-719-8376, 9215)

### 3. 격리면제서 소지 유무에 따라 예방접종확인서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?

- 격리면제서 소지 유무에 따른 확인서의 효력은 다음과 같음

	격리면제			방역패스 적용	3차접종
	등록 전 첫입국	등록 후 재입국	확진자 밀접접촉시		
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외국인 (격리면제서 미소지)	X	X	X	○	○
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후 국내에서 3차 접종 완료한 외국인 (격리면제서 미소지)	X	○	○	○	-
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내국인 (격리면제서 미소지)	X	○	○	○	○
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내외국인 (격리면제서 소지)	○	○	○	○	○

**4.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는 싱가포르에서 접종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?**

-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 이용 입국자\*는 출발 전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입국 후 격리면제 가능하지만, 해외접종력 등록 시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체크 후 등록

\* 양국 방역상황 악화 시 트러블버블 제도는 중단 될 수 있음

**5. 해외에서 1·2차 및 3차(부스터)접종까지 접종완료한 경우도 등록이 가능한가요?**

- 해외에서 3차접종까지 완료할 경우에도 시스템 상 격리면제서 소지 여부 체크 후 등록 가능함

**6.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한지?**

-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불가능함

**7. 해외 접종력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그 즉시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?**

- 해외 접종력 등록 후 예방접종확인서(종이, COOV앱) 발급이 즉시 가능함

**8.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등록이 가능한 유효기간이 있는지?**

- 등록 가능한 해외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음
- 접종 완료 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는 등록 가능함

**9. 그간 해외 예방접종증명서의 검증이 문제가 되었는데, 시스템 등록 과정 중 검증의 방법은 무엇인지?**

- 해외 각국의 예방접종증명서 건본과 비교·대조 과정을 통해 검증함

예방접종관리과(☎043-719-8376)

**10. 방문이 아닌 e-mail 등 온라인으로 해외 접종력 등록이 가능한지?**

- 정확한 접종력 확인·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증명 서류 등을 제출

예방접종관리과(☎043-719-8376)

**11. 2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도 등록 가능한지?**

- 2회 접종 권장 백신을 해외에서 1회만 접종한 경우도 등록은 가능
  - 단,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회 접종 내역이 모두 국내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

해외출입국관리팀(☎043-719-9215)

**12.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완료 사유가 아닌 그 외의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사람도 등록이 가능한지?**

-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격리면제서 확인 후 등록 가능
    - 격리면제서\*의 해외 예방접종완료 체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류 확인 후 등록
- \*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」 <서식-5>

예방접종관리과·해외출입국관리팀(☎043-719-8376, 9215)

**13.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보건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 가능한지?**

-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이 국내에서 자체 접종\*한 경우는 보건소에 예방접종 증명서류 및 외교공한\*\* 제시 후 등록 가능함
  - \* 주한대사관이 접종을 의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외교공한 제시 필요
  - \*\* 보건소에서는 외교공한 사본을 접수하며, 외교공한 원본은 외교부(외교사절담당관실)에서 접수

해외출입국관리팀(☎043-719-9215)

**14. 외교공한은 어떤 서류를 의미하는지?**

- 외교공한은 대사관(또는 총영사관, 국제기구)이 외교부에 보내는 공문서로서, 성명·직급 등 주한 외교단 신분임을 확인할 수 있음
  - \* 통상 영어로 작성되며 예외적으로 자국어 및 한국어 2개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음

해외출입국관리팀(☎043-719-9215)

**15.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의 비자 타입은 무엇인지?**

- 주한외교단(공관원)은 A계열 비자\*를 소지하고 있으나, 동반가족은 여타 비자도 있으므로 비자타입이 아닌 외교공한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
  - \* A1(외교), A2(공무), A3(협정)

16. 주한미군에서 접종 후 소속변경으로 접종력 등록이 불가능한 내·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등록 후 3차(부스터)접종이 가능한지?

- 주한미군 내 접종 후 소속 변경으로 2차 또는 3차(부스터)접종이 불가능한 내·외국인의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력 등록 후 추가접종 가능함